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연번	구 분	발의자 및 제출자	발의 및 제출일	회부일
1	박성연의원안	박성연의원 외 58명	2023년 5월 26일	2023년 6월 5일
2	시장안	서울특별시장	2023년 5월 30일	2023년 6월 1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가) 박성연의원안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기타

(1) 입법예고(2023. 06.08. ~ 06.12.)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시장안

-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 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性) 편중 방지 및 직종 다양화를 이루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협의체 위원 구성 조항 신설(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함.
- 협의체의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이 되며, 위원들은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시의회, 시 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및 지명권자(시장)가 각각 1명씩 지명함.

나. 위원구성협의체 운영 조항 신설(안 제4조의2제4항 ~ 제6항)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이 성별·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3)

- 자치경찰위원(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게 노력하여야 함.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양성평등담당관 : 개선 권고(위원구성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자치경찰위원회 : 불수용(위원구성협의체 위원은 경찰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와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하여 구성되고, 약 60일 정도만 운영되는 한시적인 협의체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협의체의 위원을 구성할 수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 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4.13.~5.3.)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들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시 특정 성(性)의 편중 방지와 인권전문가 참여 촉진을 위해 ‘위원구성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상위 법령(「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2021년 6월 기준,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 총 104명 중 여성위원은 19명(18.2%)에 불과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 여성은 없음에 따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음(news1, 15개 자치경찰위원 104명 중 여성 고작 19명·4곳은 전무 “개선책 필요”, 2021년 6월 25일자 참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 126명 중 여성위원은 25명(19%)에 불과해, 향후 출범되는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는 성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¹⁾ 이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341호, 일부개정·시행 2022.1.18.)이 개정되었음.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성별 현황 〉

(단위 : 명, %)

지역	인원(명)		비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서울	6	1	85.7%	14.3%
부산	7	-	100%	-
대구	5	2	71.4%	28.6%
인천	6	1	85.7%	14.3%
광주	5	2	71.4%	28.6%

1) 박완주, 정책위의장 2021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재인용.

대전	7	-	100%	-
울산	5	2	71.4%	28.6%
세종	5	2	71.4%	28.6%
경기남	4	3	57.1%	42.9%
경기북	5	2	71.4%	28.6%
강원	7	-	100%	-
충북	5	2	71.4%	28.6%
충남	6	1	85.7%	14.3%
전북	6	1	85.7%	14.3%
전남	6	1	85.7%	14.3%
경북	4	3	57.1%	42.9%
경남	7	-	100%	-
제주	5	2	71.4%	28.6%
전국	101	25	80.2%	19.8%
평균	5.61	1.39	80.14%	19.86%

출처 : 경찰청

※ 박완주, 정책위의장 2021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재인용.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341호, 일부개정·시행 2022.1.18.)

제4조의3(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본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약칭의 정리(시장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3조)

- 법령에서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약칭을 처음 나오는 제2조제2항이 아닌 제3조부터 약칭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 시장안에서는 맨 처음 나오는 제2조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도록 하여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약칭”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고, 법령에서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2021.12., 780면 참조).

현 행	시 장 안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략)</p> <p>②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p> <p>③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p>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 ----- ----- -----.</p> <p>③ <u>위원회</u> ----- ----- ----- -----.</p>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위원회-----.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 박성연의원안 제5조의2와 시장안 제4조의2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의 일부개정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음.

현행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p>< <u>신 설</u> ></p>	<p><u>제5조의2(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운영)</u> ① 영 제4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체의 위원장이 된다.</p>	<p><u>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u>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p> <p>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③ 협약체의 위원은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약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12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⑤ 협약체의 위원장은 협약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약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성별·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약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협약체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약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⑤ 협약체의 위원장은 협약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약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약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추천권자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명권자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협의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신설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피추천자의 성별·전문분야 편중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위원 구성 조례개정 전후 비교 〉

현 행	개 선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위원구성협의체 구성(총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 - 지정 : 시장 1명, 교육감 1명 시의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1명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총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 : 시장 1명 - 추천 :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총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 : 시장 1명 - 추천 :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 다만, 첫 번째로 개정조례안의 조문 위치를 살펴보면, 박성연의원안은 제5조의2로 하고 있고, 시장안은 제4조의2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례의 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는바,²⁾ 조문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을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구성협의체’는 위원 추천권자로부터 위원을 추천받기 전에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의 위치는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권자 또는 추천받은 사람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두 번째로, ‘위원구성협의체 위원’에 관하여 박성연의원안은 제5조제3항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안은 제4조의2제3항에서 “각각 1명씩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222면 참조

현행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 신 설 >	<p><u>제5조의2(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운영)</u></p> <p>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u>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u></p> <p>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p>

- 박성연의원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경찰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사람을 시장이 그대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³⁾ ‘위원구성협의체’ 위원도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사전협의이고,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에서는 이에 관하여 “각각 1명씩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고조례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추천권자와 지명권자가 각각 지정한 사람이 당연히 ‘위원구성협의체’ 위원으로 지정되므로, 별도로 시장의 임명·위촉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1605, 2022.5.2.)

제○조(○○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지명권자(이하 “지명권자”라 한다)가 **각각 0명씩 지정한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세 번째로, ‘위원구성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박성연의원안은 제5조의2제4항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120일 전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안은 제4조의2제4항에서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협의체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	박성연의원안	시장안
< 신 설 >	<p><u>제5조의2(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운영)</u></p> <p>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12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p>	<p><u>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u></p> <p>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p>

○○사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제○조(○○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④ 협의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0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을 살펴보면, 「경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추천·지명권자가 지정한 위원이 ‘위원구성협의체’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지명하고(붙임 1) 참조), 영제4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구성협의체’ 구성을 위원의 임기 만료 몇 일전까지 구성하도록 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시장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박성연의원안과 같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하도록 존속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3)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시장안 제4조의3)

- 시장안 제4조의3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을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박성연의원안은 관련규정이 없음.

현 행	시 장 안
<신 설>	제4조의3(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시의회(「경찰법」 제20조제1항제1호)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경찰법」 제20조제1항제4호)는 모두 2명씩을 추천하고 있으나, 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영제9조제6항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의회도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영제9조제6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추천위원회의 추천)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 적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인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위원회 구성에 성별균형 및 사회적약자를 대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법」 제19조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의 사전협의 과정으로 ‘위원구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여성과 인권전문가가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붙임 1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경찰법」 제20조제1항) : 총 7명

○ 추 천 : 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 지 명 : 시장 1명

※ 위원장(정무1급) 시장 임명, 상임위원(정무2급) 위원회 의결 → 시장 임명(법제20조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경찰법」 제21조, 영 제5조~제12조)

❖ 위원구성 : 5명(기관별 추천 및 당연직 위원 구성)

- 추천권자 : ① 자치구 의장협의체 1명, ② 자치구 구청장협의체 1명, ③ 경찰청장 1명,
④ 지방법원장 1명, ⑤ 기획조정실장(당연직)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주요기능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심의의결)

□ 자격요건(「경찰법」 제20조제2항)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 5년 이상
2. 변호사 자격 있는 자 중 국가관기관등에서 법률 사무 5년 이상 종사 경력자
3. 대학, 공인 연구기관 등 법률·행정학, 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5년 이상 종사자
4. 관할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 또는 경찰행정 등 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 결격사유(「경찰법」 제20조제7항)

○ 당적 및 선출직 3년, 경찰·검찰·국정원·군인·국가지자체 공무원 퇴직 3년 이내 등

□ 임기(「경찰법」 제23조제1항)

○ 임기 3년, 연임 불가

붙임 2 ○○시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1605, 2022.5.2.)

개정안(조문 신설 예시)

❖ 본 조례안은 참고용 예시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구성협의체 구성원, 구체적 운영방식 및 의회 추천 규정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람

제0조(○○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0명을 포함하여 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지명권자(이하 “지명권자”라 한다)가 각각 0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0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조(○○의회의 추천) ①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추천 절차는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조례 또는 의회 규칙으로 규정 등 자율적 반영